

제2953호  
2022. 9. 2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도 순 심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62호

이 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	기 관 의 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22-6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제2022-66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고 시

- 제2022-8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8
- 제2022-83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9
- 제2022-84호 :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10

● 공 고

- 제2022-666호 : 도시관리계획(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13
- 제2022-670호 :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공고 ..... 14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4.2., 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30%)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요금(별표1)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할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8873, 메일: rokaff@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1】</b>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p> <p>&lt;비 고&gt; 1~22. (생략)</p> <p><u>&lt; 신 설 &gt;</u></p>	<p><b>【별표1】</b>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p> <p>&lt;비 고&gt; 1~22. (생략)</p> <p><b>23.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b></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6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 예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11.

#### 3.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제3조(지원내용)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신설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토지관리과, 전화 : 02-3396-5904, 팩스 : 02-3396-8809, email : bcj9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과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등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및 요보호노인 긴급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9.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수 있다.
-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8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12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58-1	2022. 9. 21.	신청에 따라 다산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4. 22.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83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58-1	2022. 9. 21.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84호

###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09.26.)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 변경(통합)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3호(2020.6.4.)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5호(2021.12.30.)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

2) 면 적 : 3,530.7㎡

[대지 : 2,667.4㎡, 정비기반시설 : 863.3㎡ (측량면적 : 860.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마스틴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이석연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층, 21층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년 6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09.1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용도	비고
1,525.62	39,949.03	57.2	965.73	89.62	19/7	업무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관리청	규모 (㎡)	종류	관리청	규모 (㎡)	시행사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서울시	433.1	도로	서울시	236.6	주식회사 마스던제16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중구	340.5	주식회사 마스던제16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공원	중구	283.1	주식회사 마스던제16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계		433.1			860.2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 3396-5774)에 비치

[별지 제21호 서식](서울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13.)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라목 관련]

▶ 서울특별시 중구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축물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중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중도 구조	층수 / 층수	연면적 (㎡)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1	서소문동 58-7	대	1,432.1	1,432.1	대	일반상업 방화지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마스던제 16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사무실, 점포 철근 콘크리트조	1동 지하 2층, 지상 16층	18,983.05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근저당 현대해상화재 보험주식회사 수선협동조합 케이디비생명 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세종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 울케이디비생명타워)	주식회사 마스던제 16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자)
사용	2	서소문동 120-20	대	1,017.5	1,017.5	대	일반상업 방화지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마스던제 16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사무실 주지창 철근 콘크리트조	1동 지하 2층, 지상 10층	9,138.94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용	3	서소문동 120-37	대	20.2	20.2	대	일반상업 방화지구							-			
사용	4	서소문동 85-1	대	53.6	49.2	도로	일반상업 방화지구	-	-	-	-	-	-	-			
사용	5	서소문동 85-2	대	73.9	73.9	도로	일반상업 방화지구	-	-	-	-	-	-	-			
사용	6	서소문동 116	대	283.1	283.1	소공 원	일반상업 방화지구	-	-	-	-	-	-	-			
수용 / 사용	7	서소문동 58-3	도로	287.6	217.7	도로	일반상업 방화지구	건설부 (국)	-	-	-	-	-	-			
수용 / 사용	8	서소문동 72-4	도로	1,539.0	437.0	도로	일반상업 방화지구	서울 특별시	-	-	-	-	-	-			
		총계		4,707.0	3,530.7							28,122.0					

※ 소유자에 '주식회사 국민은행(말호안, 위탁자)'으로 표시된 것은 '주식회사 마스던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신탁한 것임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66호

도시관리계획(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일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2. 9. 21.~10. 5.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5층)  
(TEL: 02-3396-5737 / FAX: 02-3396-8784 / 전자우편: bsca94@junggu.seoul.kr)

다.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당동 100-1 일대	-	증) 199,336	199,366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신설)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신설)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리.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마.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70호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0조(명예도로명)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 등)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 고 일 : 2022. 9. 21.
- 공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5.
- 공고내용 : 명예도로명 부여

명예도로명	시 점	종 점	부여 사유	연장사용기간
우당 이회영길	명동11길 1	명동11길 42	우당 이회영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자 함	5년 (2022.9.20. ~2027.9.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3396-5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